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4차 무순위(사후) (2차) 입주자모집공고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032-834-8890

주택유형	규제지역여부	무순위(사후) 자격요건	
민영	비규제지역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없음	최초 당첨자발표일(22.03.02)로부터 3년간 적용되어 현재 전매제한기간 도과	없음	미적용

구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순위(사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및 계약체결
일정	2022.02.11.(금)	2026.10.22.(목)	2026.10.27.(화), 2026.10.28.(수)	2026.11.02.(월)	2026.11.04.(수)~2026.11.05.(목)

1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6.06.1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무순위(사후)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 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국내거주로 불인정되어 청약신청 불가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만 신청이 가능(현장접수 불가)하며,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방식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KB국민 인증서	토스 인증서	신한 인증서	카카오 인증서
APT잔여세대 (무순위)	○		X				

■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2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10.22.(목)**이며(청약자격 요건 중 나이, 거주요건 등의 판단기준일), 주택관리번호는 **2026910271**입니다.
- 본 주택은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합니다(외국인 청약불가).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02.11.(금)**이며 최초 주택관리번호는 **2022000069**이므로,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주택공급가격 및 단지여건, 유의사항 등의 세부 내용은 반드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금회 공급 주택형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시 1순위 및 2순위 청약 마감된 주택형으로,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추가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미계약 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서 본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향후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최초 분양 완료 후 **건본주택 운영 및 사이버 모델하우스 운영이 종료**되었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 후 해당 세대를 개방할 예정이오니 신청 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입주지정기간이 종료된 단지로, 계약 체결 후 정해진 납부일정에 따라 공급금액(계약금, 잔금)을 모두 납부하셔야 하며, **대출 기관을 알선하지 않습니다.**
- **본 주택은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무순위 방식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최초 계약 당시 선택되었던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에 따라 시공이 완료되었습니다. 따라서 시공 완료된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을 모두 수락하는 조건으로만 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하오니, 이 점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마이너스옵션,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의 추가, 변경 또는 취소 불가)**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무순위(사후) 접수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및 계약체결
일 정	2026.10.27.(화), 2026.10.28.(수)	2026.11.02.(월)	2026.11.04.(수)~2026.11.05.(목)
방 법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불가	■ (PC·모바일) 청약홈	■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분양사무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323, 송도 센트로드 B동 905호)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청약 신청은 1인 1건만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본 주택은 현재 전매제한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사용승인 완료되어 입주가 가능한 준공 후 공급하는 주택이므로 부동산 투자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소유권이전등기 등 신청의무)에 따라 계약자는 소유권이전등기(본 주택과 관련한 분양대금 및 제세공과금 완납 후 가능) 완료 후 전매(매매, 증여, 임대 및 기타 권리의 변동)를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 포함)가 가능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

- 인천광역시 연수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 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지세 납부 안내**

- 본 주택의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며, 계약서 또한 「인지세법」상 “도급문서”로서 인지세 납부대상으로 「인지세법」 제1조에 의거 인지세 납부대상이 되며, 공급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연대하여 균등납부하기로 합니다. 또한, 분양계약자가 분담 부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 인지 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사이트 (<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2.12.31.개정된 「인지세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공급계약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세액 : 부동산 거래계약서의 실제 거래가격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납부세액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 납부방법: 정부수입인지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구매 후 출력하여 계약서에 첨부하거나, 우체국 은행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분양권 매매 당사자뿐만 아니라 물건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나 등기 대행하는 법무사도 구매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직접 출력 시, 반드시 프린트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발행 불가)**

- 인지세 납부 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자료실(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시거나 세무서(소비 담당)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 공급질서 교란 행위, 통장 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부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97-2번지(A16BL)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36층 12개 동, 총 1,319대 중 잔여 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6년 11월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된 납부 의무가 있는 모든 금액 납부 완료 시 즉시 입주 가능

■ 공급대상

(단위 : m², 세대)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타입)	잔여세대수	잔여세대 동·호 내역		
					동	호	
2026910271	01	084.9900A	84A	1	410	1303	
	02	084.9600B	84B	3	403	2201	
					406	2301	
					407	501	
	03	084.9900C	84C	1	402	1602	
	04	109.9900A	109A0	3	401	1403	
					406	303	
					406	703	
	합 계				8	-	

- 평형 환산 방법 : 공급면적(m²) × 0.3025 또는 공급면적(m²) ÷ 3.3058

- 상기 세대 타입별 계약면적에는 계단실, 세대 벽체 면적 등의 주거 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생활지원센터,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 그 밖의 기타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근린생활시설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단수 조정으로 인하여 각 세대별 계약면적은 전체 총 연면적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소수점 이하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오차 조정에 따른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전용면적 및 계약면적, 대지지분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 및 공부 정리 절차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증감될 수 있고,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으며, 별도 정산하지 않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타입별 분양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사업계획변경,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 정리 절차 등 부득이한 경우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 별도 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고,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주택형의 구분은 입주자 모집공고상의 표기이며 홍보 제작물(카탈로그 등)은 타입(약식표기)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09A0 타입은 오픈발코니 위치에 따른 타입을 구분한 것으로, 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계약면적이 동일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 표시 안내

주택형	084.9900A	084.9600B	084.9900C	109.9900A
약식표기(타입)	84A	84B	84C	109A0

■ 공급금액 및 납부 일정

(단위 : 세대, 원)

약식표기 (타입)	구분	층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대지비	건축비	부가가치세	합계	계약 시	입주지정일
84A	410동 3호	13층	1	479,090,700	411,909,300	-	891,000,000	89,100,000	801,900,000
84B	403동 1호, 406동 1호, 407동 1호	5층	1	465,110,500	399,889,500	-	865,000,000	86,500,000	778,500,000
		22층, 23층	2	479,628,400	412,371,600	-	892,000,000	89,200,000	802,800,000
84C	402동 2호	16층	1	471,562,900	405,437,100	-	877,000,000	87,700,000	789,300,000
109A0	401동 3호 406동 3호	3층	1	545,258,510	468,855,900	46,885,590	1,061,000,000	106,100,000	954,900,000
		7층	1	550,911,520	473,716,800	47,371,680	1,072,000,000	107,200,000	964,800,000
		14층	1	556,050,620	478,135,800	47,813,580	1,082,000,000	108,200,000	973,800,000

■ 분양대금 납부계좌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명
아파트 분양대금 관리계좌(계약금)	신한은행	5621-5698-029561	송도랜드마크시티(유)
아파트 분양대금 관리계좌(잔금)		계약 체결 시 세대별 개별계좌 부여(가상계좌)	

■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무상옵션) 금액 및 납부 일정

(단위 : 원, VAT 포함)

약식표기 (타입)	동호수	옵션그룹명	옵션품목명	추가 선택품목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무상옵션	
				금액	합계	계약 시	입주지정일		
84A	410-1303	발코니 확장	H키친	35,920,000	43,620,000	4,362,000	39,258,000	욕실	욕조
								파우더장	좌식
		시스템에어컨	84_전실_거실,주방,침실1,2,3(총5개소) _삼성(일반형)	7,700,000				보조주방	손 빨래볼(수전 포함)
								바닥마감	포세린타일
								쿡탑	3구 인덕션(SK매직)
84B	403-2201	발코니 확장	H키친	37,800,000	53,180,000	5,318,000	47,862,000	욕실	욕조
		시스템에어컨	84_전실_거실,주방,침실1,2,3(총5개소) _삼성(고급형)	9,200,000				파우더장	입식
		가전	식기세척기	650,000				보조주방	손 빨래볼(수전 포함)
			빌트인 냉장/냉동/김치냉장고 +키큰장(수입H/W)_삼성 비스포크(코타)	5,240,000				바닥마감	포세린타일
		기타 품목	드레스룸 특화	290,000				쿡탑	3구 인덕션(SK매직)

	406-2301	발코니 확장	기본확장형	35,980,000	41,150,000	4,115,000	37,035,000	욕실	욕조					
								파우더장	좌식					
		시스템에어컨	84_부분_거실,주방,침실1(총3개소) _삼성(일반형)	5,170,000				보조주방	분리수거함					
								바닥마감	원목마루(중국산)					
								쿡탑	하이브리드쿡탑(SK매직)					
	407-501	발코니 확장	기본확장형	35,980,000	43,970,000	4,397,000	39,573,000	욕실	욕조					
								파우더장	입식					
		시스템에어컨	84_전실_거실,주방,침실1,2,3(총5개소) _삼성(일반형)	7,700,000				보조주방	손 빨래볼(수전 포함)					
								바닥마감	포세린타일					
		기타 품목	드레스룸 특화	290,000				쿡탑	3구 인덕션(SK매직)					
84C	402-1602	발코니 확장	기본확장형	36,690,000	54,173,000	5,417,300	48,755,700	욕실	욕조					
		시스템에어컨	84_전실_거실,주방,침실1,2,3(총5개소) _삼성(일반형)	7,700,000										
		가전	기능성오븐_일반형(LG)	400,000				파우더장	좌식					
			식기세척기	650,000										
			빌트인클리너(그렉스)	260,000										
		기타 품목	복도벽 세라믹타일	1,560,000				보조주방	손 빨래볼(수전 포함)					
			욕실 벽/바닥 포셀린타일(이태리산)	3,870,000										
			수전+도기(American Standard)	810,000						바닥마감	포세린타일			
			주방가구 매입조명	830,000										
			조명특화(거실+침실1)	883,000								쿡탑	3구 인덕션(SK매직)	
			세대현관 천장형 에어컨샤워(그렉스)	520,000										
		109A0	401-1403	발코니 확장				H키친	46,500,000	113,764,000	11,376,400	102,387,600	욕실	샤워부스
				시스템에어컨				109_전실_거실,주방,침실1,2,3,4(총6개소) _삼성(일반형)	9,460,000					
가전	빌트인 냉장/냉동/김치냉장고 +키친장(수입H/W)_LG 오브제(솔리드)			6,020,000										

			인덕션 3구(삼성)	1,850,000				파우더장	입식				
			기능성오븐_일반형(LG)	400,000									
			식기세척기(삼성)	1,000,000									
			H BELL (현대에이치티)	137,000									
		기타 품목	멀티라운지	960,000							보조주방	손 빨래볼(수전 포함)	
			수입산 주방가구_유로모빌Ⅱ_H키친_원목테이블 미포함(차콜, FENIX)	38,620,000									
			복도벽 세라믹타일	2,770,000							바닥마감	포세린타일	
			욕실 벽/바닥 포셀린타일(이태리산)	4,160,000									
			수전+도기(American Standard)	810,000									
			조명특화(거실+침실1)	1,077,000									
	406-303	발코니 확장	H키친	46,500,000	74,000,000	7,400,000	66,600,000	욕실	샤워부스				
		시스템에어컨	109_전실_거실,주방,침실1,2,3,4(총6개소) _삼성(고급형)	11,260,000									
		가전	빌트인 냉장/냉동/김치냉장고 +키친장(수입H/W)_삼성 비스포크(코타)	5,240,000				파우더장	좌식				
			식기세척기	650,000									
			의류관리기(LG)	1,740,000				보조주방	분리수거함				
			빌트인클리너(그렉스)	260,000									
		기타 품목	멀티라운지	960,000				바닥마감	포세린타일				
			복도벽 세라믹타일	2,770,000									
			미세먼지 저감 방충망_전실	4,100,000						쿡탑	3구 인덕션(SK매직)		
			세대현관 천장형 에어샤워(그렉스)	520,000									
		406-703	발코니 확장	H키친				46,500,000	56,097,000	5,609,700	5,609,700	욕실	욕조
			시스템에어컨	109_전실_거실,주방,침실1,2,3,4(총6개소) _삼성(일반형)				9,460,000				파우더장	좌식
												보조주방	손 빨래볼(수전 포함)
			가전	H BELL (현대에이치티)				137,000				바닥마감	포세린타일
												쿡탑	3구 인덕션(SK매직)

※ 본 주택은 **최초 계약 당시 선택되었던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에 따라 시공이 완료되었으므로, 시공 완료된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을 모두 수락하는 조건으로만 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마이너스옵션,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의 추가, 변경 또는 취소 불가)

■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명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 관리계좌(계약금)	신한은행	5621-5698-015564	현대건설(주)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 관리계좌(잔금)		계약 체결 시 세대별 개별계좌 부여(가상계좌)	

※ 공급금액 및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 금액은 반드시 각 지정계좌로 입금해야 하며, 현금 수납은 불가합니다.

※ 상기 항목별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공급금액은 인정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 입금하시고 입금증은 계약 시 제출 바랍니다. (입금 예시 : 1901동 201호 당첨자가 홍길동인 경우 입금자명에 '19010201홍길동' 기재)

※ 타인 명의 등 납부 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공급대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 등의 처리가 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모든 공급금액(계약금, 잔금)은 약정된 납부일에 지정된 계좌로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회차별 지정 계약 기간 내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공급금액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금자 중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 기간 이후 환불 가능합니다. (환불 시기 방법 등은 추후 통보)

※ 본 주택은 **사용승인 및 소유권 보존등기를 완료한 주택으로,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된 납부 의무가 있는 모든 금액 납부 완료 시 즉시 입주가 가능하며, 입주 지정 기한(잔금 납부 기한)은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 잔금 납부기일 이전 선납을 하는 경우 선납 할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4

청약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구분	내용
대상자	■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신청가능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필요로 하는 무순위 청약이 불가합니다.
청약신청 제한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 신청 불가 - 동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한 분 또는 예비입주자 중 추가입주자로 선정된 분 - 동 주택에 당첨되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분 - 부적격 당첨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 공급질서교란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무순위(사후)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 ■ 주택형별 무순위(사후) 공급세대수의 900%까지 무작위 추첨으로 예비입주자 선정 및 예비순번 배정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무순위 → 주택명 및 주택형 선택 → 유의사항 및 청약자격 확인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 서비스

청약홈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6.11.02.(월) ~ 2026.11.11.(수) (10일간)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 제공일시 : 2026.11.02.(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 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서류 접수 및 계약 체결

- 서류 제출 및 계약 체결 일시 : 2026.11.04.(수)~2026.11.05.(목) 10:00~16:00 ※ 예비입주자의 계약 체결 일정은 추후 별도 공지 예정입니다.

■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 서류 (금회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구분	서류유형		해당 서류	발급 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신고증 ※ 여권의 발급일이 2020년 12월 21일 이후인 경우 “여권 정보증명서” 추가 필요 ※ 온라인(모바일) 신분증은 인정되지 않으며,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구비하여야 함.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본인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 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 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하여 발급(주소변동사항 제외)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배우자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 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상세”로 발급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본인발급용 인감증명서에 한함 (용도: 주택공급신청 및 계약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체 가능. 단, 제출 시 제3자 대리 신청 불가 ※ 온라인 인감증명서의 경우 발급용도 및 제출처 확인 후 발급 (발급용도(직접 작성): 서류제출 및 계약용 / 제출처 : 현대건설㈜)
	○		인감도장	본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외
	○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	본인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현재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1961년 이전 출생자는 1961.1.1.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
해외근무자 (단신 부임)	○		해외 체류 증빙서류	본인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 내역 등 근로자가 아닌 경우 (※ 아래 사항 반드시 제출) ① 비자 발급 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 관련 증빙서류가 불가능한 자는 생업사정 불인정
	○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 배우자 및 세대원의 해외 체류 여부 확인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현재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1961년 이전 출생자는 1961.1.1.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
		○	비자 발급 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체류 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본인 및 세대원 전원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 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 발급 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 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당첨자(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단신 부임 인정 불가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사업주체에서 요청하는 서류	해당자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타 무주택자 증명서류 등 부적격 유형에 따라 별도 안내 예정
대리인 신청 시 (추가 구비)	○		위임장	본인	■ 계약 장소 내 비치
	○		인감증명서	본인	■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신고증 ※ 여권의 발급일이 2020년 12월 21일 이후인 경우 “여권 정보증명서” 추가 필요 ※ 온라인(모바일) 신분증은 인정되지 않으며,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구비하여야 함.

※ 상기 제증명 서류는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22.) 이후 상세 발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여부,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등을 위해 모두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라며, 서류발급 시 필히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전체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인감증명서는 본인 발급분만 인정합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 체결 시 구비 서류 (금회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구분	구비 서류	제출유형		발급 기준	서류 제출 대상 및 발급 유의사항
		필수	해당자		
본인 계약 시	신분증	○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신고증 ※ 여권의 발급일이 2020년 12월 21일 이후인 경우 "여권 정보증명서" 추가 필요 ※ 온라인(모바일) 신분증은 인정되지 않으며,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구비하여야 함.
	추가 개별 통지 서류		○	-	■ 사업주체가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 통지)
	인감도장	○		본인	■ 서류 제출 기간에 제출한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해야 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시 서명으로 대체
	계약금 입금 영수증	○		-	■ 계약 장소에서 수납 불가. 무통장입금 또는 인터넷뱅킹 이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		본인	■ 계약 장소에 비치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		본인	※ 부동산 거래신고가 6억원 이상인 경우
	전자수입인지	○		-	■ 수입인지 세액 : 1억원 이상 ~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수입인지 구입처> - 오프라인 : 우체국·은행(해당 기관 영업시간에 방문하여 구입) - 온라인 : 전자수입인지(e-revenuestamp.or.kr) 사이트에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입 후 출력
대리인 계약 시 추가 제출 서류 (본인 외 모두 제3자)	계약자(당첨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본인	■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 본인 발급분만 가능하며, 대리인 발급분은 절대 불가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대리 계약 불가
	위임장		○	-	■ 계약 장소에 비치,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인장		○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신고증 ※ 여권의 발급일이 2020년 12월 21일 이후인 경우 "여권 정보증명서" 추가 필요 ※ 온라인(모바일) 신분증은 인정되지 않으며,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구비하여야 함.

※ 상기 제증명 서류는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22.) 이후 상세 발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여부,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등을 위해 모두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라며, 서류발급 시 필히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전체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인감증명서는 본인 발급분만 인정합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및 계약체결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일시 : 예비순번 순서대로 별도 통보 예정

-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일시 : 동·호 배정 후 즉시 계약

- 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 : 상기 당첨자 계약 체결 구비 서류 참조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및 계약 체결 일시는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주택형의 계약 현황 및 예비입주자 계약 진행에 따라 예비입주자 선정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 시 현금 수납은 불가하며, 계약금을 즉시 이체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일 이체 한도 확인)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남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table><tr><td>조항</td><td>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td><td>주거전용면적</td><td>수도권</td><td>비수도권</td></tr><tr><td>제53조제9호가목</td><td>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td><td>60㎡ 이하</td><td>1억 6천만원</td><td>1억원</td></tr><tr><td rowspan="3">제53조제9호나목</td><td>단독주택</td><td rowspan="3">85㎡ 이하</td><td rowspan="3">5억원</td><td rowspan="3">3억원</td></tr><tr><td>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td></tr><tr><td>도시형 생활주택</td></tr></table>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일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기타 유의사항

-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문상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2022.02.11.)을 확인하시어 모든 유의사항 및 단지 여건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청약 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공사 완료된 상태에서 계약 취소분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하는 아파트로, 이미 시공된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에 대해 추가, 변경, 취소 등을 요구하실 수 없으니, 이 점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준공 및 입주 완료되었으므로 설계변경 또는 마감 사양 등 시공 상태를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라며, 잔금 지급 전 하자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적용됩니다.
- 잔금 납부기일은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로 그 전에 입주할 경우 세대 출입 열쇠 수령 전에 잔금을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 금액의 관리비 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구분	사업주체	시공업체
상호명	송도랜드마크시티 유한회사	현대건설 주식회사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323, B동 4층 401호 (송도동, 송도센트로드 오피스비동 40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법인등록번호	110114-0065167	110111-0007909

■ 문의 : 032-834-8890 (평일 10:00~17:00, 주말·공휴일·점심시간(11:30~13:00) 제외 / 통화량이 많을 경우 전화 연결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분양사무실 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323, 송도센트로드 B동 905호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분양사무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 법령이 우선합니다.)

※ 본 공고와 분양계약서상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분양계약서를 우선 적용합니다.